



비정규직직원임용규정

제정일	2016. 3. 1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비정규직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제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구분) 본교의 비정규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약직원 : 일정기간 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2. 무기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제 3조 (임용) ① 직원의 임용사유는 결원으로 인한 인원 보충, 특정 사업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일반사무행정 보조 혹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한다.
- ② 직원의 임용절차는 본교 직원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고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 ④ 계약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 제 4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 5조 (보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자격과 경력, 담당업무의 성격 및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조 (근로계약의 종료)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근로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2.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되었을 경우
 3.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종료 혹은 중단되었을 경우
- 제 7조 (해임)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무단결근 3회 이상 또는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60점 미만의 하위 점수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본교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 8조 (해고의 예고) 계약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만료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 9조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개월분에 해당하는 평균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제10조 (직종 전환) 계약직원이 근무평가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제11조 (정년)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년에 달한 날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6.10. 1)
- 제12조 (재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정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재고용 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비정규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